

# 이사회 운영규정

제정 : 2010. 02. 24

개정 : 2011. 05. 25    2012. 05. 25    2013.02.02

## 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[적용범위]

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3조 [권한]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4조 [구성]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,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.

## 제5조 [의장]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에 정한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6조 [간사]

전략기획팀장은 이사회 의 간사가 되며 이사회 의 소집통지, 안건의 상정, 의사록의 작성 등 이사회 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.

## 제7조 [개최시기]

이사회는 이사회 운영 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거 필요 시 개최한다.

## 제8조 [소집]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의 유고 시에는 제 5조 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임시 이사회를 소집 시에는 최소한 회의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 시,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9조 [결의방법]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 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,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제10조 [부의사항]

#### 1. 상법상의 부의사항

##### 1)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- ① 정기주주총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
- ②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- ③ 정관의 변경
- ④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
- ⑤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⑥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⑦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##### 2)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, 대규모 재산의 차입,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과 지정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

##### 2-2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
##### 3)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

##### 4)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간이 주식교환의 승인 및 완전 모회사의 소규모 주식교환의 승인

- 5)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
- 6)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
- 7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7-2)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8) 신주의 발행
- 9) 신주인수권 양도성 결정
- 10) 준비금의 자본전입 결정
- 11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12) 전환사채 발행
- 13)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
- 14) 간이합병의 승인
- 15) 소규모합병의 승인
- 16) 일정범위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
- 17) 주주제안의 채택
- 18) 상법 제542조의 9에 의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
  - ① 단일거래 규모가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
  - ② 당해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 총액이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(단, 영위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으로 거래 총액을 받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제외)
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의사항

- 1) 이익소각
- 2) 자기주식 취득 처분  
신탁계약 체결해지
- 3) 신종사채 발행
- 4) 중간배당의 결정

3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과의 100억원 이상의 거래 행위

4. 경영 주요사항 공시와 관련 부의사항

- 1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 법인 해당시 1,000분의 25) 이상의 담보제공(타인을 위한 담보제공) 또는 채무보증
- 2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 법인 해당시 1,000분의 25)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
- 3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 법인의 해당시 1,000분의 25) 이상의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취득 및 처분

- 4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 법인의 해당 시 100분의 5)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
  - 5) 자산총액의 100분의 5(대규모 법인에 해당될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
  - 6)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5(대규모 법인에 해당 될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, 파기
5. 정관에 의한 부의사항
- 1) 대표이사의 선임, 해임 및 공동 대표의 결정
  - 2) 이사회운영 개정 및 폐지
  - 3)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
6. 기타 부의사항
- 1) 중장기 사업계획
  - 2)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- 3) 중요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
  - 4) 중요한 소송에 관한 사항
  - 5) 상기 각호 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6) 상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공정거래법, 공시 규정 및 정관에서 상기 10조 1항~4항과 관련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동 법규에 따라 상기 내용은 자동 변경됨

#### **제11조[보고사항]**

이사회에는 부의안건과 구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1. 경영실적 및 전망
2. 주요문제점 및 대책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# **제12조 [이사회 내 위원회]**

이사회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
1. 감사위원회
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3. 경영위원회
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#### **제12조 2 [감사위원회]**

-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 제39조2 및 본 규정 제12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

설치 할 수 있다.

-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# 제12조 3 [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]

-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 제39조2 및 본 규정 제12조에 따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# 제12조 4 [경영위원회]

- ① 이사회결의로 정관 39조 2 및 본 규정 13조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, 본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회사 경영전략을 심의, 결정한다.
- ③ 경영 위원회의 결정은 총 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에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며 결의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정관 25조의 2 및 본 규정 12조에 의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다
  - 가. 금융 기관으로부터 과목별, 건별 500억원 이하의 신규차입
  - 나. 금융기관으로부터 U\$10,000,000 이하의 해외현지 금융 기채
  - 다. 500억 원 이하의 신규지급보증 한도 및 무역금융 한도 설정
  - 라. 어음할인 또는 매각
  - 바. 기차입한 동일한 금액의 차입기간 및 보증기간의 연장
  - 사. 100억원 미만의 국내 및 해외 신규투자 및 출자
  - 아. 이사회에서 기 승인된 국내외 투자사업과 관련 한 소요자금의 분할차입 및 지급보증
  - 자. 상법, 정관, 이사회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 및 회사의 일상업무에 관련 된 사항

### 제13조 [위임]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사의 중요한 업무사항 이외에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경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이외에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

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#### **제14조 [사후승인]**

- ①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이사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 할 수 있다. 단, 즉시 이사회를 소집 하여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때부터 대내적인 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#### **제15조 [이사회 의안상정]**

이사회 부의 및 보고안건은 대표 이사가 제안자 및 보고자가 되며, 이사회 의안은 회의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6조 [관계인의 출석]**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.

#### **제17조 [의사록]**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한다.

#### **제 18조 [사외이사의 경비]**

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조사 비용, 참석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**부칙**

- ~~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~~
- ~~이 규정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~~
- ~~이 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~~
- 이 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